

# 정정신고(보고)

2017년 5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당신을위한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4.29
3. 정정 내용 :
  - S-P클래스 추가
  - 환매수수료 삭제

##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①~④(생략) (추 가)	①~④(생략)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및 S-P클래스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4.(생략) (추 가)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4.(생략) <b>15. S-P 클래스 수익증권</b>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 기준· 및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14.(생략) (추 가)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14.(생략) <b>15. S-P 클래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b>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4조(환매 가격 및 환매 방법)	<p>③판매회사(제23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b>환매수수료</b>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b>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b></p> <p>③판매회사(제23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b>(삭 제)</b>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제25조 (환매 수수료)	<p>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 수수료를 징구한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3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이하 본 항에서 “ 이익금 ”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li> <li>2.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30</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립식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환매수수료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70</li> </ol>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P 클래스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⑤판매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 수익증권지속약관 ” (C-P 클래스의 경우에는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제39조(투자 한도)	<p>②<b>제1항제1호 및 제2호</b>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생략)</li> <li>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b>제1항제1호 및 제2호</b>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p>②<b>제1항제1호 내지 제3호</b>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생략)</li> <li>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b>제1항제1호 내지 제3호</b>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제41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li> <li>2.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li> </ol>	<p>·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제42조(투자신탁보수)	<p>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4.(생략)</p> <p>(추 가)</p>	<p>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4.(생략)</p> <p>15. S-P클래스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8</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제44조(투자신탁의 해지)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ol> <p>(추 가)</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____(이하 생략)</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li> <li>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li> <li>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li> <li>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li> <li>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li> </ol> <p>(삭 제)</p> <p>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____(이하 생략)</p>
제51조(신탁계약의 변경)	<p>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p>	<p>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p>
제54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 저축약관” (C-P클래스(추 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 저축약관” (C-P클래스 및 S-P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매수수료 삭제, S-P클래스 추가 등)